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9 선고 2021가단525650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유태훈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신상민

변 론 종 결 2022. 6. 20.

판 결 선 고 2022. 9.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1. 체결된 증여계약은 21,398,21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1,398,2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C은 2018. 11. 26.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8. 11. 26. C과 사이에 C이 위와 같이 E은행으로 대출을 받음에 있어 C의 대출금채무가 불이행되는 경우 E은행이 입을 손해를 담보하는 내용의 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C의 채무불이행으로 E은행에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C은 원고에게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과 대출약정상의 연체이율 중 적은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C은 2019. 5. 28.부터 E은행에 이자 등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E은행은 2020. 1. 13.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20. 2. 19. E은행에게 보험금 19,166,590원을 지급하였다.

(4) 2021. 9. 3. 기준으로 원고가 위 신용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은 21,398,210원이다.

나.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1) C은 2019. 2. 1. 당시 남편이던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C은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는 2021. 8. 20. F에게 2021. 4.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지만, 이미 C와 E은행 사이의 대출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위와 같은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 그리고 C이 별다른 직업이 없어 E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전에 C이 E은행에 대출금 이자의 지급을 적지 않은 기간 연체하여 E은행이 2020. 1. 13.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위와 같은 구상금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또한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20. 2. 19. 원고가 E은행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에게 구상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가 C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인지 여부

피고는,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 명의를 C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은 피고와의 혼인 중 C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C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어 피고가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증여계약이 무효로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닌지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계약은 혼인 중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데, 그 후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혼소송 중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재판상이혼이 이루어졌다. 혼인 중 재산분할협약은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루어진 조건부 의사표시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상이혼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정지조건 불성취로 무효인바, 원고는 무효인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나) 인정사실

○ C은 피고와 부부 사이였는데, 2018. 11.경 피고와 같이 거주하던 집에서 나가 강릉으로 간 후 그곳에서 거주하였다.

○ 이에 피고가 C에게 ‘피고와 C이 이혼을 하고, 아이들은 피고가 양육하는 대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이전해달라’고 요구하자 C은 2019. 2. 1.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2019. 2. 1. C에게 ‘1억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2년간 매월 200만 원 합계 4,8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200만 원은 2년 후에 지급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 피고와 C의 신청에 따라 2019. 5. 9. 춘천지방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피고가 불출석하였다.

○ 그러던 중 C은 2019. 10. 8.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9드단6694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① 이혼, ② 위자료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③ 재산분할로 1억 5,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④ 자식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C을 지정, ⑤ 자식들의 양육비 지급’을 구하였다.

○ C은 위 이혼소송의 소장에서 재산분할 청구와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C의 친정에서 구입 대금을 일부를 지원하였고,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넘긴 것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인데,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아 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C 본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그 이후의 변론 내지 준비서면에서도 본인의 소극재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다.

○ 피고는 위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의 소극재산 및 적극재산에 관하여만 변론을 하였을 뿐, 원고의 소극재산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 그러던 중 2021. 4. 6. C과 피고 사이에 위 이혼소송에서 ‘① C과 피고가 이혼하고, ② G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H, I, J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각 지정하며, ③ 피고가 C에게 H, I, J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④ 재산분할로, 피고는 C에게 51,270,000원을 지급하되, 2021. 5. 31.까지

30,000,000원, 2021. 6. 30.까지 21,270,000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며, ⑤ 피고는 C에게 C이 양수한 K(C의 어머니)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1억 원을 지급하되, 2021. 9. 20.까지 50,000,000원, 2021. 12. 20.까지 50,000,0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고(K의 L계좌로 지급한다), ⑥ C과 피고는 현재 각자 명의로 보유하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와 C이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 이후 피고와 C 사이에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상이혼 절차에서 조정에 따라 이혼이 이루어졌는바,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그 조건의 불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인 법률행위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점(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무효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그보다 입증이 용이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특히 당사자들 사이에 무효 행위에 관한 소급적 추인이 이루어져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고,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공시방법이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는데, 그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사해행위 취소를 통해 취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당사자 사이에 소급적으로 추인이 이루어진 경우 그 무효인 법률행위도 사해행위 취소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이혼 소송 소장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피고와 C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후 C과 피고 사이에 이혼소송 절차에서 당시 각자 명의로 보유하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는바,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C과 피고는 위 조정을 통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소급적으로 추인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 성립

결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채권액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처분되었으므로,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채권액 상당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선의라고 주장한다.

위 나.항에서 인정할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전제가 된 E은행의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C이 피고와 같이 거주하다가 집을 나간 후 별거 중에 발생한 것인 점,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와 C 사이에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인데, 당시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받는 대신 C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점, 피고와 C 사이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공방이 이루어졌는데, C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 피고와 C 사이의 이혼소송은 쌍방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채로 진행되었고, 그 이혼소송의 기간이 약 1년 6개월 동안 진행되었는바, 위와 같은 진행경과에 쌍방 사이에 성립된 조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와 C이 채무를 면탈하는 등의 목적으로 가장이혼을 위해 이혼소송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피고가 선의에 해당함을 여러 간접사정을 통해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추측에 의한 것에 불과하여 그 주장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을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영

(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춘천시 M에 있는 N아파트 O동

[도로명주소]춘천시 P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지붕 15층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춘천시 M 대 25140.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Q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19.9166㎡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25140.4분의 66.9768 끝.

